

수원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2가단54223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1. C

2.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서미옥

변 론 종 결 2023. 1. 10.

판 결 선 고 2023. 2. 7.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2018. 3.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와 접수 제89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D은 2018.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와 접수 제305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실행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12. 8.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12. 27.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후 보증금액은 217,6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8. 12. 27.로 변경되었다). 소외 회사는 참가인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참가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했을 때에는 소외 회사는 참가인에게 대위변제금,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일정 비율을 적용한 위약금 및 기타 참가인이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채채무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A은 소외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 및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1) A은 2018. 2. 14.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18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피고 C는 2018. 9. 4. A의 여동생인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18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신용보증사건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1) 소외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참가인은 2018. 11. 14. 위 신용보증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215,332,158원을 변제하였다.

2) 참가인은 2018. 11. 16. 소외 회사, A, F를 상대로 구상금 216,676,904원의 지급, A과 F 사이에 광명시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8. 8.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6. 12.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2123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라. A의 파산선고 및 소송절차의 수계

1) A은 2020. 6. 22. 수원지방법원 2020하단3809호, 2020하면380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21. 8. 30. 11:00경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참가인은 2021. 8. 30. 16:06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117157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제1,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부분은 2021. 10. 9. 피고 C에게, 2021. 10. 23. 피고 D에게 각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22.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A을 수계한다는 내용의 수계신청서를 제출하고, 2022. 6. 16.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부분이 2022. 6. 23. 피고 C에게, 2022. 6. 24. 피고 D에게 각 송달된 후 위 사건은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의 본안전화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화변의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한 2018. 11. 16.경, 또는 이 사건 아파트가 임의경매로 매각된 2019. 7. 30.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 수 있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8.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96조).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 · 포괄적 채무처리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27.자 2013마4020 결정 참조). 이 경우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수계 후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의 소마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A에 대한 파산선고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원고가 소송수계 후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한 이상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파산선고일(2021. 8. 30.)로부터 2년 내인 2022. 6. 16. 이 법원에 부인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부분이 2022. 6. 23. 피고 C에게, 2022. 6. 24. 피고 D에게 각 송달되었으므로, 소송수계 후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부인의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D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피고 D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이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도 없고,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이라는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고 한다)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2. 14.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는 2018. 9. 6.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는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무렵 소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참가인의 소외 회사 및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 후인 2018. 11. 14. 참가인이 중소기업은행에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참가인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A의 적극재산은 시가 445,000,000원 이하의 이 사건 아파트와 매매대금 180,000,000원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었는데, 소극재산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등 합계 546,246,946원으로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점(A은 피고 C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C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피고 A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고, 매매대금을 A에게 지급한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참가인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A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 D은 A의 여동생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악의가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고, 원고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인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부동산 목록

1. 강원도 강릉시 대 661㎡

2. 강원도 강릉시

[도로명주소] 강원도 강릉시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주택

1층 70.57㎡

2층 34.74㎡

